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

산일전기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활동의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을 바탕으로 주주 권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제 1 장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 등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회사는 주주가 주주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한다.

제 3 조 (주주의 책임)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 4 조 (이사의 기능)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핵심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이사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관리·감독하며,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제 5 조 (이사의 구성 및 이사 선임)

1.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하며,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2. 이사회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지닌 유능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3.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책임이 있는 자는 이사 선임에서 배제한다.

제 6 조 (사외이사)

1.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진을 감독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2.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출석률, 안건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한다.

제 8 조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3. 회사는 이사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선임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권한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은 명문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감사기구

제 10 조 (감사)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며,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감사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와 일반 업무를 감사한다.
3.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감사 활동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제 11 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립된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외부감사인은 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 관련 주주의 질문에 답변한다.

제 4 장 이해관계자 및 공시

제 12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1. 회사는 고객, 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법령과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자의 권리 존중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합병, 분할, 감자 등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제 13 조 (공시)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공시 사항 외에도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2. 회사는 특정인에 대한 정보 차별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3.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